

18. 楊州郡聚落地域開發에關한條例閉止條例案	42 面
19. 第26回議會(臨時會)議事日程	43 面

【 1 】 제26회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의년월일 : 1994. 5. 26.

제 의 자 : 의 장

제안이유

제26회 임시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건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기 위함임.

주요골자

회 기 : 1994. 5. 28 ~ 6. 11(15일간)

【 2 】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발의년월일 : 1994. 5. 26.

발 의 자 : 김재현의원외 1인

주 문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제안이유

군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과 회의규칙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

【 3 】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26.

제출자 : 양주군수

제안이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 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1. 년간 7일 이상의 연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차치 단체장에의 여행 신고제도를 폐지함 (안 제19조제2항 및 제26조의2)
2.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제3항)
3.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하도록 함(안 제22조제4호)
4.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백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3)

양주군조례 제 호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증개정조례안

양주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주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 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2중 “군수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백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파견근무)① (생 략) ② (생 략) (신 설)	제10조(파견근무)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u>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u>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 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주군수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 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 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 이상 6월 미만	3 일
6월 이상 1년 미만	7 일
1년 이상 2년 미만	8 일
2년 이상 3년 미만	11 일
4년 이상 5년 미만	14 일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
-----	---
-----	---
-----	---
-----	---

현 행	개 정 안								
<table border="1"> <tr> <td>근 속 기 간</td> <td>연가일수</td> </tr> <tr> <td>5년 이상</td> <td>20 일</td> </tr>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5년 이상	20 일	<table border="1"> <tr> <td>근 속 기 간</td> <td>연가일수</td> </tr> <tr> <td>-----</td> <td>---</td> </tr> </table>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5년 이상	20 일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u>제26조의2의</u>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공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 ----- ---- <u>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p>3. (생 략)</p> <p>〈<u>신 설</u>〉</p> <p>4. (생 략)</p> <p>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u>군수에게 신고하고</u>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p>	<p>3. (현행과 같음)</p> <p>4. <u>승진 ·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u></p> <p>5. (현행 제4호와 같음)</p> <p>제26조의2(국외여행) ----- -----<u>(사 제)</u> -----.</p>																														
<p>【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 <input type="radio"/> 본인 <input type="radio"/> 자녀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td> <td>7 1 1</td> </tr> <tr> <td>회갑</td> <td>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td> <td>5 1</td> </tr> <tr> <td>출산</td> <td> <input type="radio"/> 배우자(처) </td> <td>1</td> </tr> <tr> <td>사망</td> <td>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input type="radio"/> 자녀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백숙부모 </td> <td>7 5 3 3 3</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input type="radio"/> 본인 <input type="radio"/> 자녀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7 1 1	회갑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 1	출산	<input type="radio"/> 배우자(처)	1	사망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input type="radio"/> 자녀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백숙부모	7 5 3 3 3	<p>【별표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대 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결혼</td> <td>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td> <td>- - -</td> </tr> <tr> <td>회갑</td> <td>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td> <td>- -</td> </tr> <tr> <td>출산</td> <td> <input type="radio"/> -----(-) </td> <td>-</td> </tr> <tr> <td>사망</td> <td>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u> </td> <td>- - - - - -</td> </tr> </tbody> </table>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 - -	회갑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	출산	<input type="radio"/> -----(-)	-	사망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u>	- - - - - -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input type="radio"/> 본인 <input type="radio"/> 자녀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7 1 1																													
회갑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5 1																													
출산	<input type="radio"/> 배우자(처)	1																													
사망	<input type="radio"/> 배우자 <input type="radio"/>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 <input type="radio"/> 자녀 <input type="radio"/> 형제자매 <input type="radio"/> 백숙부모	7 5 3 3 3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 - -																													
회갑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 -																													
출산	<input type="radio"/> -----(-)	-																													
사망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u> <input type="radio"/> <u>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u>	- - - - - -																													

현 행		개 정 안			
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px; height: 100px;"> <tr><td>2</td></tr> <tr><td>1</td></tr> <tr><td>1</td></tr> </table>	2	1	1
2					
1					
1					

* 비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비고 : -----

-----.

【 4 】 양주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년월일 :: 1994. 5. 19.

제 출 자 : 양 주 군 수

제안이유

본 사업은 읍면 행정의 최일선에서 리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리장들의 사기양양을 위해 리장자녀중 우수학생 및 경제여건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리장직 기피현상으로 인한 장학생의 자격에 관한 기준이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현실여건에 맞게 부분개정 함으로써 다수의 리장자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주요골자

1. 장학금 지급 목적의 일부 조정 (안 제1조)
2. 장학생의 자격요건 완화